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52741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4. 12. 10.

판결 선고2015. 1.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2,818,266원 및 그 중 71,043,613원에 대하여는 2013. 12. 9.부터, 61,079,048원에 대하여는 2014. 1. 8.부터 각 2014. 4. 30.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984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984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 내지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4.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이 2006. 9. 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의 원리금 반환채무를 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보증'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4. 21. 피고 A과 재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이 2011. 4. 2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120,000,000원의 원리금 반환채무(이후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위 대출금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를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증'이라고 한다).

다.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만약 원고가 위 각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 지급일 다음날부터 보증채무 소멸일 전날까지 약정한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비율로 계산한 추가보증료, ③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를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A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 B, C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피고 A은 2013. 9. 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위 2006. 9. 4.자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10. 4.경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후 농협은행 주식회사도 2013. 10. 22.경 원고에게 피고 A이 위 2011. 4. 22.자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2013. 10. 1.경부터 지체하였음을 알리는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2. 9.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71,043,613원(대출원금 7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제2보증채무를 이행하고, 2014. 1. 8.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61,079,048원(대출원금 59,5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제1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사. 2014. 4. 16. 현재 제1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444,700원이고,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50,905원이다.

아. 피고 A은 그가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피고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98454호로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자. 피고 B은 그가 소유하는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27. 피고 D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98453호로 피고 D에게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총 132,122,661원(=

71,043,613원 + 61,079,048원)과 추가보증료 444,700원 및 권리보전비용 250,905원을 합한 132,818,266원 및 그 중 제2보증채무이행금액 71,043,613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일인 2013. 12. 9.부터, 제1보증채무이행금액 61,079,048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일인 2014. 1. 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4. 4. 30.까지는 약정한 연 1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3. 9. 2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과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같은 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은 모두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만약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원고가 보증한 각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제1보증의 주채무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2013. 9. 5.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경과한 2013. 9. 6. 주채무자인 피고 A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증에 따른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이는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9. 27.보다 앞서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에 따른 사전구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한편, 이 사건 제2보증의 주채무인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지체가 2013.

10. 1.경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보증에 따른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그에 대한 피고 B의

연대보증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사전구상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성립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 A이 2013. 9. 5.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13,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그 직원인 E에게는 2013.

5.경부터, F에게는 2013. 6.경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9. 27. 당시에는 피고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의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0. 1.경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이 위 대출금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제2보증에 따른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보증에 따른 사전구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도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안양시 동안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시가 200,000,000원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당시 피고 A은 소극재산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원금 총 293,000,000원에 달하는 대출금채무(이 사건 제1보증의 주채무인 대출금채무는 제외), E에 대한 37,858,248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무, F에 대한 16,500,000원의 임금채무, 63,070,000원의 국세채무, 피고 D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A은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또한,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은 유일한 적극재산으로 시가 250,000,000원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원금 9,440,000원의 대출금채무,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원금 54,520,933원의 대출금채무, 피고 D에 대한 130,000,000원의 채무 등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증에 따른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제2보증에 따른 사전구상채무 또한 이미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미 채무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이 사건 제1, 2보증의 주채무인 각 대출금채무의 당시 잔여 원금 합계 129,500,000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59,500,000원 +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금 70,000,000원) 상당의 사전구상채무 또한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은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D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984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에게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9. 30. 접수 제984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김웅재

판사곽용현

별지